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72807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728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단5930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항소인1. 주식회사 B

2. C

변론 종결 2021. 10. 20.

판결 선고 2021. 12. 2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단59302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90,796원과 그 중 47,556,272원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0. 2. 4.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재철

판사문현정

판사강지현